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879호 2012. 4. 17(화)

포항시보

◀ 훈 령 ▶

- 포항시 명예청렴감사관 운영 규정 (훈령 제248호) 2

◀ 입법예고 ▶

- 포항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012-189호) 8
- 포항시 아이조아플라자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제2012-678호) 15
-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상수도사업소 공고 제2012-11호) 23

◀ 고 시 ▶

- 포항 초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변경) (제2012-25호) 31

◀ 공 고 ▶

- 『포항항 개항 50주년 & 시민의 날』 시민 참가자 모집 공고 (제2012-705호) 39

회 람									
--------	--	--	--	--	--	--	--	--	--

훈 령

포항시 훈령 제248호

포항시 명예청렴감사관 운영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 한다.

2012년 4월 10일

포 항 시 장 박 승 호

포항시 명예청렴감사관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시정 감시기능을 강화하며 시민생활 불편사항, 포항시 소속 공무원과 공단 소속 임직원의 부조리 및 비리 제보 등 시민이 참여하는 열린감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포항시 명예청렴감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포항시 명예청렴감사관(이하 “명예청렴감사관” 이라 한다)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 1.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시정발전에 관심이 많은 사람
- 2.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3.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정의감 및 신고정신이 투철한 사람

② 시 및 산하기관과 영리업무 관련자, 각종 비위사실 관련자 등은 명예 청렴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③ 시장이 명예청렴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제3조(임무 등) ① 명예청렴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시민 불편·불만사항 제보
2. 위험시설·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 제보
3. 공직자 부조리, 비위 및 불친절 행위에 대한 제보
4. 시에서 실시하는 감사 및 조사 참여
5. 주요 건설공사장의 준공검사 등에 시민감독관으로 참여
6.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 등

② 시장은 명예청렴감사관의 감사·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감사 및 조사기법, 근무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자체감사에 참여하여 감사활동을 하는 명예청렴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시 소속 감사담당자로 본다.

제4조(임기) 명예청렴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른 후임 명예청렴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품위유지 등) ① 명예청렴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명예청렴감사관은 역할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감사·조사에 참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 청렴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2. 명예청렴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제보사항 처리) ① 명예청렴감사관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시정에 관한 사항을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명예청렴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명예청렴감사관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련기관(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안유지) 시장은 제보사항에 대하여 접수·조사·처리하는 과정에서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시장은 명예청렴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명예청렴감사관이 감사, 조사 및 주요 건설공사장의 시민감독관으로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명예청렴감사관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포항시 명예청렴감사관 운영규정 [별지 제3호서식]

명예청렴감사관 제보 및 건의사항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일
명예청렴 감사관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제보 및 건의내용	
--------------	--

명예청렴 감사관 의 건	
--------------------	--

「포항시 명예청렴감사관 운영규정」 제7조에 따라 제보 및 건의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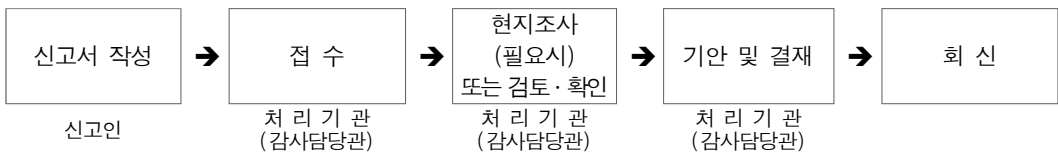
신고인(포항시 명예청렴감사관)

(서명 또는 인)

포항시장 귀하

첨부서류	1. 각종 제보 및 건의사항 관련 증빙 자료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1. 제정이유

- 전문성과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을 갖춘 인사를 명예청렴감사관으로 위촉함으로써 시민의 불편사항, 공무원의 부조리 및 비리 제보, 시정감시활동을 수행케 하고 시민의 자율적 참여에 기초한 열린감사 기능을 강화하여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명예청렴감사관의 구성 및 자격을 정함(안 제2조).
- 명예청렴감사관의 임무, 임기, 위·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제3조, 제4조, 제6조).
- 명예청렴감사관의 제보사항 처리내용에 대하여 정함(안 제7조).
- 명예청렴감사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내용을 정함(안 제9조).
- 명예청렴감사관 활동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표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입법예고

포항시 공고 제2012-189호

포항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4월 13일

포항시장 박승호

포항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보건진료소관리운영 규정(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이 전면 폐지됨(2011. 12. 16. 보건복지부훈령 제29호)에 따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25조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과 제21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명 변경

“포항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 “포항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나.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보건기관 수가기준에 준하는 진료비 징수 및 진료비 감면 규정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서 규정한 보건진료소 설치 운영에 관하여 진료비징수 및 납부, 재무회계 등 필요한 사항과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리 단위에 마을건강사를 둔다.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안 제7조부터 제14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5.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보건정책담당관실, 주소 : 포항시 남구 시청로1 (대잠동), 전화 270-3263, FAX 270-3270, E-mail : phej@korea.kr)에게 서면, 전화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PC통신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4.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포항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포항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포항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포항시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제21조, 제2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합리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 보건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보건기관 의료보험 진료수가 중 보건진료소 수가기준에 준하는 진료비를 징수한다. 다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포항시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이용 조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재무회계) 보건진료소의 자산, 수수료, 진료수입 및 회계사무에 관하여는 「포항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4조(징수 등 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은 당일 징수하여야 하며 당일 납부를 원칙으로 한다. 부득이하여 보건진료소가 보관하는 현금의 보관 한도액은 20만원으로 한다.

제5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6조(마을건강사) 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리 단위에 마을 건강사를 둘 수 있다.

② 마을건강사는 자원봉사자로서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마을건강사가 제1항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교육 등에 참여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협의회) ①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으로 구성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8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9조(기능) 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기구) 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임원) 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운영위원 15명 이내
4. 감사 1명
-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12조(협의회장 활동수당) 운영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
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5조(재정) ① 협의회는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 ② 협의회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공고 제2012-678호

포항시 아이조아플라자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4월 10일

포항시장 박승호

포항시 아이조아플라자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어린이의 꿈과 재능을 키워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체험시설인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아이조아 플라자 위치 : 포항시 남구 대도동 328-15번지 일원(안 제2조)
- 나. 아이조아 플라자 시설 및 기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아이조아 플라자 신청 및 허가 등에 관한 사항(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 라. 아이조아 플라자 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 마. 아이조아 플라자 운영 및 위탁사항 등에 관한 사항(안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3. 관련법령

- 「아동복지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4. 제정 조례안 : 붙임

5. 입법예고기간 : 2012. 4. 11 ~ 4. 30

6. 의견제출

포항시 아이조아플라자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2년 4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 (참조 : 여성가족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제출 및 문의처

- 보내실 곳 : 포항시청 여성가족과(포항시 남구 시청로 1)
- 전화 054)270-3023, 팩스 054)270-3020, 이메일 ep5622@korea.kr

라. 제출서식

입 법 안	수 정 안	수정 사유

7.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이하 “아이조아” 라 한다)는 포항시 남구 대도동 328-15번지 일원에 둔다.

제3조(시설 및 기능) ① 아이조아는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체험시설, 다목적홀, 사무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

② 아이조아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아이조아 내 설치된 각 시설물 등의 관리 및 운영
2. 어린이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
3. 어린이 사고력 및 상상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4.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설치기준) 체험시설의 설치기준은 「아동복지법」 제17조 및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다.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아이조아의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신청을 통해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
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안전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4. 그 밖에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 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할 경우
- 3. 사용료를 정해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제8조(사용료 등) ① 아이조아의 시설 사용료 및 체험시설 이용료는 별표와 같이 한다.

② 다목적홀 사용자는 특별한 공연을 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입장권을 발행하고, 관람객으로부터 소정의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장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입장료에 관하여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입장권은 사전 검인을 받아야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입장료를 받을 경우에는 입장료 수입배분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

⑤ 아이조아의 프로그램 수강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사용료 등의 납부 및 반환) ① 아이조아의 시설 및 체험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료 등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라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공연 종료 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 하여야 한다.

-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 2. 아이조아의 특별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 3. 체험 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할 때는 전액 반환하고, 그 외에는 100분의 50을 반환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수수료는 반환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등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이조아 시설의 사용료 전부를 면제한다.

- 1. 포항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보육 행사
- 2. 시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보호자 및 어린이집 종사자를 위한 교육
-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시설의 이용료 전부를 면제한다.

-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

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1조(운영 등) ① 아이조아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이 한다. 다만, 아이조아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수행에 적합한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위탁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 운영비 등의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관계 법령에 정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시설물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 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운영시설을 개조·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수탁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업무 처리가 위법, 부당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수탁조건, 협약내용을 위반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경우

3.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1호와 제2호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로 하여금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자료, 장비 및 비품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또한 시장은 기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에 대하여 아이조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이용 후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6조(관계규정의 준용) 아이조아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을 준용한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민간위탁사무 중 “여성가족과”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관리·운영

【별표】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시설 사용료 및 체험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1. 포항시 아이조아 플라자 시설의 사용료

시 설 명	사용목적	사용료	비 고
다목적홀	일반 행사	50,000원	1. 1회 1시간 기준 사용료임 2. 사용시간이 초과할 경우, 1시간마다 50퍼센트 가산함 3. 사용시간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함 4. 행사전 사용은 기준액의 50퍼센트로 함
	업무협약	협약에 의함	
부대시설 ○ 냉·난방 ○ 음향시설 프로젝터 조명		10,000원 10,000원	1. 1회 1시간 기준 사용료임 2. 사용료 가산은 공연장 사용료의 가산기준과 같음

2. 체험시설의 이용료

시설명	기준		이용료	비고
체험시설	어린이	개인	5,000원	1. 단체는 20명 이상임 2. 인솔교사는 무료
		단체	3,000원	
	보호자		3,000원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포항시 아이조아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공고 제2012-11호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2년 4월 16일

포항시장 박승호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번 조례개정으로 상수도요금이 인상됨에 따라 경영부담이 늘어나는 착한가격 모범업소에 대하여 상수도요금의 일부를 감면하여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지원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착한가격 모범업소에 대하여 월30톤의 사용량 요금감면(안 제20조)
- 계량기 검침 불가능한 급수전등에 대한 사용수량 추정인정을 현실에 맞게 조정(안 제26조)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 등

3. 관련법령

-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제38조

4. 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2. 5.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포항시장(참조 :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 다. 기타 필요한 사항 등
 - 보내실 곳 : 포항시 상수도사업소 수도행정과
(포항시 남구 시청로 1번지(대잠동))
 - 전화 054-270-5332, FAX 054-270-5320

6. 기 타

자세한 내용은 포항시 홈페이지(www.@ipohang.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이라 함은 조례 제2조제1항”을 “이란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이라 함은 제1항”을 “이란 제1호”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6조에 따라”로 하고, “시장”을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당해”를 “해당”으로 한다.

제18조제2항 중 “1월” “1개월”로 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1인”을 “1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식품위생법」에 의한 모범업소에”를 “「식품위생법」 또는 착한가격(물가안정)에 의한 모범업소에”로 하며, “단, 1개의 계량기로 2개업소 이상이 함께 사용하거나 가정용과 혼용할 경우에는 제외 한다”를 “단, 1개의 계량기로 2개 업소 이상이 함께 사용하거나 가정용과 혼용할 경우에는 제외되며, 중복감면을 받을 수 없다”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동조”를 “같은 조”로, “기타”를 “그 밖의”로 하고, “다만, 추정조정은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를 “다만, 추정조정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로 한다.

제26조제3항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3인” 을 “3명” 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제29조제2항 중 “기타”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32조제2항 중 “6월” 을 “6개월” 로 한다.

제34조제3항 중 “매월” 을 월” 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요금 등의 감면) 개정 규정은 2012년 6월달에 부과되는 사용료 고지분 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 ----- -----</p>
<p>제2조(정의) (생략)</p> <p>1. “옥외시설”이라 함은 <u>조례 제2조 제1항의 급수설비 중 수도계량기</u>까지의 급수시설을 말한다.</p> <p>2. “옥내시설”이라 함은 <u>제1항의 옥외시설을 제외한 급수설비의 수용자가 자기 시설 안에 설치한 급수시설</u>을 말한다.</p> <p>3. ~ 4. (생략)</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이란 「포항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u>제2조제1호</u> -----</p> <p>2. -----이란 <u>제1호</u> ----- ----- -----</p> <p>3. ~ 4. (현행과 같음)</p>
<p>제4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 등) ① <u>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u> 급수공사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토지 및 건물소유자 또는 그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u>시장에게</u> 제출하여야 한다.</p> <p>1. (생략)</p> <p>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u>당해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u>. 다만, 허가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상이할 때, 건물소유자가 신청시는 토지소유자의 승낙서를 생략한다.</p> <p>② ~ ③ (생략)</p>	<p>제4조(급수공사의 신청 및 승인조건 등) ① ---- <u>제6조에 따라</u> ----- ----- ----- ----- <u>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u> -----</p> <p>1. (현행과 같음)</p> <p>2. ----- ----- ----- ----- ----- ----- ----- ----- -----</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10조(특수가압 시설의 설치운영) ① 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운영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개인 또는 당해지역 주민대표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p> <p>1. ~ 4. (생 략) ② ~ ⑥ (생 략)</p>	<p>제10조(특수가압 시설의 설치운영) ① --- 제17조제1항에 따른----- ----- -----해당----- ----- 1. ~ 4. (현행과 같음) ② ~ ⑥ (현행과 같음)</p>
<p>제18조(기본요금 및 사용료 계산) ① (생 략) ② 사용료는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폐전·급수정 지정수 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그 일수가 1월 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p> <p>③ ~ ⑤ (생 략)</p>	<p>제18조(기본요금 및 사용료 계산) ① (현행과 같음) ② ----- ----- -----1개월----- ----- 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20조(요금 등의 감면) ① (생 략)</p> <p>1. (생 략)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보장시설에 대하여는 보장시설 수급자 1인당 월 3톤의 수도사용량에 대한 수도요금을 감면한다. 3. 「식품위생법」에 의한 모범업소에 대하여는 월 30톤의 수도사용량에 대하여 요금을 감면 하되, 30톤 미만 사용업소는 해당요금을 감액한다. 단, 1개의 계량기로 2개 업소 이상이 함께 사용하거나 가정용과 혼용할 경우에는 제외한다.</p> <p>② (생 략)</p>	<p>제20조(요금 등의 감면) ①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 2. ----- ----- ----- 1명----- ----- 3. 「식품위생법」 또는 착한가격(물가 안정)에 의한 모범업소에 ----- ----- 단, 1개의 계량기로 2개 업소 이상이 함께 사용하거나 가정용과 혼용할 경우에는 제외하며, 중복 감면을 받을 수 없다.</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5조(운반급수와 사용료) ① 시장은 급수구역의 안팎 및 급수시설의 유무에 불구하고 수용가의 신청 사유가 타당하거나, 천재지변, 기타 특수사정으로 급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반급수를 할 수 있다.</p> <p>② (생 략)</p>	<p>제25조(운반급수와 사용료) ① ---- ----- ----- -----그 밖에----- ----- ----- ②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26조(계량기 고장 급수전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p> <p>① (생 략)</p> <p>② 조례 제28조제1항의 계량기검침 정례일 또는 동조 제3항의 기간동안 공가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기타 사유로 정례 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제1항에 준하여 사용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다음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u>다만, 추정조정은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u></p> <p>③ 부정 급수전에 대하여는 가족수 (또는 종업원수)·시설규모 기타 제여건이 유사한 3인 이상의 습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p> <p>④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의 고장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당해 시설의 단위 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누수량을 결정한다.</p>	<p>제26조(계량기 고장 급수전등에 대한 사용수량 인정)</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u>같은 조</u>----- -----<u>그 밖의</u>-----</p> <p>-----<u>다만, 추정조정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연속하여 2회를 초과하지 못한다.</u>-----</p> <p>③ -----<u>그 밖에</u>----- -----<u>3명</u>-----</p> <p>④ -----<u>해당</u>-----</p>
<p>제29조(수도요금의 고지 및 독촉) ① (생 략)</p> <p>② 수도사용자가 납기 내에 사용료 및 기타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액독촉장을 납기 경과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기한을 정하여 체납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p> <p>③ (생 략)</p>	<p>제29조(수도요금의 고지 및 독촉) ① (현행과 같음)</p> <p>② -----<u>그 밖에</u>-----</p> <p>③ (현행과 같음)</p>

현 행	개 정 안
<p>제32조(기존급수설비의 임시사용) ① (생 략)</p> <p>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6월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6월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p>③ (생 략)</p>	<p>제32조(기존급수설비의 임시사용) ① (현행과 같음)</p> <p>② -----6개월----- ----- -----6개월----- ----- -----</p> <p>③ (현행과 같음)</p>
<p>제34조(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감면) ① ~ ② (생 략)</p> <p>③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감면은 매월단위로 산정된 중수도 빗물사용량에 대하여 상수도사용량의 10퍼센트 범위 내에서 감면 할 수 있다.</p> <p>④ (생 략)</p> <p>⑤ 계량기는 <u>당해</u> 시설물의 소유자가 설치하여 관리하며 교체 또는 수리 할 때에는 지체 없이 상수도사업소로 통보하여야 한다.</p>	<p>제34조(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 설치자에 대한 요금감면)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 -----월----- ----- ----- -----</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해당----- ----- -----</p>

고 시

포항시 고시 제2012-25호

포항 초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고시(변경)

포항시 고시 제2011-9호(2011.2.15)로 고시한 포항 초곡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수립(변경)에 대하여 토지등의 세목이 일부 누락되어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변경)합니다.

2012년 4월 10일

포항시장 박승호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포항 초곡지구 도시개발구역(변경없음)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위 치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산38-9번지 일원

나. 면 적 : 907,540㎡

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구분	구역명	위 치	면 적 (㎡)			최초결정일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초곡지구 도시개발 구역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산38-9번지 일원	907,540	-	907,540	2008.5.15 경북고시 제2008-22 7호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에 의한 제1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가. 체계적인 개발을 통한 양질의 택지 공급
- 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동시에 인근지역과 균형 발전 도모

4.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변경없음)

- 가. 시행자 : 경상북도개발공사
- 나. 사무소 소재지 : 경상북도 경산시 옥산동 731번지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 가. 시행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환지처분일까지
- 나. 시행방법 : 환지방식

6.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 붙임1,2

7.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도시개발구역지정(변경) 및 개발계획수립(변경)의 관계도서는 아래 장소에서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 가. 열람장소: 포항시청 도시계획과 054-270-3475
- 나.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5일

[붙임] 토지 등의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1. 편입토지 조서 : 변경없음

- 게재 생략

2.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 등의 세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명세

가. 물건조서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단위	성명	주소	권리명세	성명	주소	
1	초곡리	11	차양1	철파이프 판넬	8.16㎡	이 숙 자	경북 포항시 북구 홍해읍 초곡리 11	근 저 당	홍해농 업협동 조합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홍해읍 성내리 46-1	
			차양2	철파이프목조 칼라시트	17.6㎡						
			가추1 (다용도실)	컨테이너	16.5㎡						
			창고4	슬레이트	12.54㎡						
			가옥	조립식판넬	93.73㎡						
			가추3(가옥)	컨테이너	18㎡						
			가추4(창고)	컨테이너	5㎡						
			차양5	철파이프 칼라시트	15.6㎡						
			차양6	철파이프 칼라시트	41.18㎡						
			창고7	조립식철재박스	7.98㎡						
			계사3	목조, 철파이프	7.98㎡						
			차양7	철파이프합판	14.88㎡						
			창고 및 건조장	비닐하우스	97.35㎡						
			창고8	철파이프천막	16.1㎡						
			화단1	자연석	56㎡						
			화단2	자연석	25㎡						
			차양8	판넬	6.6㎡						
			공장	철골칼라시트	172.1㎡						
			울타리	그물망	5식						
			감나무	18년	1주						
			감나무	15년	5주						
			호도나무	15년	1주						
			매실나무	12년	26주						
음나무	10년	6주									
음나무	4년	1주									
두릅나무	10년	58주									
가죽나무	10년	3주									

가. 물건조사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단위	성명	주소	권리명세	성명	주소	
1	초 곡 리	11	느릅나무	20년	1주	이 숙 자	경북 포항시 북구 홍해읍 초곡리 11	근 저 당	홍해농 업협동 조합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홍해읍 성내리 46-1	
			느릅나무	7년	1주						
			헛개나무	8년	9주						
			살구나무	15년	1주						
			은행나무	8년	1주						
			석류나무	8년	2주						
			포도나무	15년	1주						
			웃나무	6년	6주						
			웃나무	15년	1주						
			뽕나무	10년	2주						
			뽕나무	5년	1주						
			메론나무	10년	1주						
			느티나무	17년	26주						
			밤나무	15년	4주						
			산수유나무	13년	2주						
			모과나무	20년	1주						
			모과나무	9년	1주						
			측백	10년	1주						
			배나무	15년	7주						
			목련나무	10년	1주						
			단풍나무	10년	1주						
			소나무	10년	2주						
			앵두나무	10년	1주						
치자나무	8년	1주									
박태기나무	4년	2주									
박태기나무	3년	1주									
목단	6년	1주									

가. 물건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권리 명세	성명	주소	
1	초 곡 리	11	키위나무 (양다래)	10년	2주	이 숙 자	경북 포항시 북구 홍해읍 초곡리 11	근 저 당	홍해 농업 협동 조합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홍해읍 성내리 46-1	
			연산홍	10년	10주						
			홍도화	8년	1주						
			해당화	8년	20주						
			벗나무	20년	1주						
			복숭아나무	10년	1주						
			대추나무	20년	1주						
			대추나무	8년	1주						
			대추나무	2년	13주						
			능선화	10년	1주						
			줄장미	10년	1주						
			매화나무	10년	3주						
			향나무	10년	1주						
			사철나무	10년	1주						
			닭		13수						
가추5(공장)	철골칼라시트	126㎡									
2	초 곡 리	11-3	차양3	철파이프 칼라시트	48.4㎡	이 서 경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1454-7 빌드윈 르헤브 -701				
			차양4	철기둥칼라시트	40.5㎡						
			창고1	철재기둥부직포 천막	29.52㎡						
			창고2	철재기둥부직포 천막	8.4㎡						
			창고3	철재기둥부직포 천막	7.8㎡						
			창고5	철재기둥천막	19.5㎡						
			창고6	철재기둥천막	15.12㎡						
					4.96㎡						
			공구함	차량용 적재박스	57.6㎡						
			바닥포장1	콘크리트	136.8㎡						
			바닥포장2	콘크리트	49.5㎡						
바닥포장3	콘크리트										

일련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단위	성명	주소	권리명세	성명	주소	
2	초곡리	11-3	바닥포장4	콘크리트	105㎡	이서경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1454-7 빌드원 르헤브 -701				
			바닥포장5	콘크리트	195.2㎡						
			바닥포장6	콘크리트	48㎡						
			바닥포장7	콘크리트	17.39㎡						
			바닥포장8	콘크리트	128.15㎡						
			가추6(공장)	철골칼라시트	120.79㎡						
			가추7(공장)	철파이프천막	62.4㎡						
			가추8(공장)	철파이프천막	143.99㎡						
			가추9(공장)	컨테이너	28.13㎡						
			가추10(공장)	조립식판넬	12.22㎡						
			가추11(공장)	컨테이너	18㎡						
			차양9	철파이프 플라스틱판넬	59.28㎡						
			차양10	철파이프 칼라시트	28.56㎡						
			차양11	판넬	6㎡						
3	초곡리	158	농사용전기	3Kw	1식	최용달	경북 포항시 북구 홍해읍 학천리 607				
			창고11	철재기둥부직포 천막	4.65㎡						
			창고12	목재	9.61㎡						

나. 영업권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영업권 의 종류	구조 및 규격	편입 수량	소유자		비고
	리	지번				성명	주소	
1	곡	11	영업권	영업권(포스우드)	1식	이 서 경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1454-7 빌드원 르헤브-701	
				엣지벤딩기(4mm) 4600*1000*1500	1대			
				CNC자동재단기 4500*1500*5000	1대			
				포밍기(HPM) 7000*1500*1500	1대			
				프레스기 3000*2500*3000	1대			
				자동재단기(45도) 3000*1500*1500	1대			
				접합기(45도) 3000*1000*1500	1대			
				CNC턴닝쇼 3000*1500*2000	1대			
				횡절재단기(중) 2500*800*1000	1대			
				횡절재단기(대) 3000*800*1200	1대			
				알미늄후레임컷팅기 800*1500*600	1대			
				축경사재단기 700*500*500	1대			
				에어드라이기 700*500*400	1대			
				컴프레샤 15HP	1대			
				컴프레샤 10HP	1대			
				언더볼가공기(2.2KW) 2500*1800*1000	1대			
				언더백접기 3000*800*500	1대			
				전동벨트(사포기) 1000*700*400	1대			
				전동벨트(사포기) 800*700*400	1대			
				에어저장기(10KG/CM2) 1500*500*500	1대			
				손잡이흡파기 2000*700*1000	1대			
플대(수성분드용) 2000*1500*500	1대							
옆면면취기 1500*800*500	1대							
집진기	5대							
송풍기(소형)	10대							
운반수레(철재)	10대							

나. 영업권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영업권의 종류	구조 및 규격	편입수량	소유자		비고
	리	지번				성명	주소	
1	초곡리	11	영업권	전동목공용 공구 (50여종)	1식	이서경	경북 포항시 북구 장성동 1454-7 빌드원 르헤브-701	
				지게차(3.5TON)	1대			
				유리장홈파기 1500*3000*700	1대			
				리프트 1200*500*600	1대			
				전동지게차	1대			
				선풍기(천정부착형)	10대			
				엣지벤딩기 (0.45MM) 1800*800*500	1대			
				자동포장기 1000*1200*500	1대			
				경첩보링기 2000*800*500	1대			
				연마기	1대			

다. 주거이전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주거구분	가족수	주거연면적	소유자		비고
	리	지번				성명	주소	
1	초곡리	11	자가거주	2명	93.73 m ²	이숙자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초곡리 11	

라. 축산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물건종류	구조 및 규격	편입 수량	소유자		비고
	리	지번				성명	주소	
1	초곡리	6-1	축산	한우 3년	6두	이용우	경북 포항시 북구 흥해읍 용한리 814-8	
				한우 2년	3두			

마. 분묘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물건종류	구조 및 규격	편입 수량	소유자		비고
	리	지번				성명	주소	
1	초곡리	산38 -14	분묘	유연분묘	1기	이중원	대구 수성구 중동 395-3 동우그린B동 502호	
			석물	상석, 향로석, 혼유석	1식			

공 고

포항시공고 제 2012-705호

『포항항 개항 50주년 & 시민의 날』 시민 참가자 모집 공고 포항항 개항 50주년을 맞아 영일만의 작은 포구에서 동북아 중심항만으로 성장하고 있는 영일만항과 포항시의 발전을 53만 포항시민과 함께 경축하고 포항의 미래비전을 제시하는 뜻 깊은 행사에 포항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시민화합과 축제의 한마당을 마련코자 분야별 시민 참가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2년 4월 13일

포항시장 박승호

모 집 개 요

- 행사일시 : 2012. 6. 9(토) 15:00~22:30
- 행사장소 : 형산강 둔치(특설무대 설치)
- 모집분야 : 3개분야(해상퍼레이드, 시민골든벨, 시민스타킹)
- 모집기간 : 2012. 4. 17~5. 25(금) 18:00까지
- 모집대상 : 포항시민 누구나(가족단위 신청도 가능)
 ※ 해상 퍼레이드 신청은 개항등이(62년생), 6월12일생으로 한정
- 신청방법 : 인터넷, 전화, 팩스, 방문접수 모두 가능
 - 인터넷 접수 : 포항시 홈페이지(<http://www.ipohang.org>)
 - 전화 및 방문접수 : 빨리콜센터(☎270-8282), 각 읍면동사무소
 - 팩스 접수 : 270-2070(시청 자치행정과)
- 신청서식 : 시민스타킹 신청자는 참가분야 기재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 소	휴대폰	비고 (참가분야)

- 문의전화 : 시청 자치행정과(☎270-2071) 또는 각 읍면동사무소

□ **포항항 개항 50주년 기념 해상선박 퍼레이드 참가**

- 참가일시 : 2012. 6. 9(토) 17:00~18:30
- 참가구간 : 동빈내항(개항기념비) ~ 송도방파제 ~ 형산강둔치
※ 퍼레이드 참가자 제트보트 탑승후 해상으로 이동(4km)
- 모집대상 : 개항동이62년생 50명, 1~50세 6월12일생 50명
※ 포항항 개항 50주년 행사의 상징성 고려 모집대상 제한
- 혜택사항
 - 퍼레이드 참가(제트보트 탑승) 및 T-셔츠 지급
 - 인기가수(틴탑 섭외예정) 축하공연시 별도 관람석 마련
 - 퍼레이드 참가자 자원봉사시간 인정(필요시)

□ 「최고의 포항시민을 찾아라」 골든벨 대회 참가

- 대회일시 : 2012. 6. 9(토) 15:00~18:00
- 대회장소 : 형산강 둔치(메인행사장)
- 우승자 시상

1등	2등	3~10등	참가자 경품	비 고
우승트로피 및 100만원 상품권	50만원 상품권	자전거 1대씩	자전거 10대	

※ 골든벨 참가자 기념행사 종료후 경품추첨(10명)

□ 「포항시민 스타킹」 대회 참가

- 대회일시 : 2012. 6. 9(토) 15:00~18:00
- 대회장소 : 형산강 둔치(메인행사장)
※ 사전예심 : 2012. 6. 1(금) 14:00, 대잠홀 예정
- 우승자 시상

1등	2등	3~5등	비 고
우승트로피 및 50만원 상품권	30만원 상품권	자전거 1대씩	